

#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 I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이 지침은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된 사항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하 “농관원”)의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관련 분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	과 장	054-429-7800
		계 장	054-429-7807
		담당자	054-429-7808

\* 협조 : 지자체 시·군·구, 읍·면·동 등

### 1 개요 및 일반사항

**가. 목적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형직불제 시행에 따른 수령대상 농지의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추진하기 위함

**나. 근거 법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12조, 제17조~제19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 >

-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할 것’이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①농지형상 유지, ②~④농지기능 유지)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②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연간 1회 이상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땀’)할 것  
 ③ 이웃한 농지 등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④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등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7조 >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수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8조 〉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 〉

- 제12조, 제18조제1항의 의무 미이행자 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 다. 2025년 준수사항 이행점검 추진방향

- ☑ 신규대상자 점검강화, 반복적인 부적합 면적 신청 제외를 위해 ①시스템을 활용 사전 모니터링, ②우려필지 대상 현장조사를 기초로 이행점검 추진

\* 리후렛, 이·통장 교육자료, 영상자료 등을 사전에 제작하여 농가 배포

- 이행점검 적용기간(현장점검 기준일) : '24.10.1. ~ '25.9.30

\* 현장조사는 9.30일까지 완료하고, 의견청취 등을 통해 10.15일까지 조사 완료

- 적용시점 : 위 기간 내에 부적합으로 적발된 시점

## 라. 직불금 신청 전 대상농지 모니터링

- (사전 모니터링) 기본직불 신청 전, 부적합 우려가 있는 필지를 현장조사 맵(항공사진)과 현장확인 등의 방식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농업인)에 안내하여 적격 신청 유도('24.10~'25.4월)

- (농관원) 현장조사 맵(항공사진) 확인 결과 부적합 신청이 우려되는 필지를 선정하고, Agrix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연계하여 지자체가 직불금 접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 현장확인 시 방문 7일 전까지 농업인에게 일시, 목적, 내용 등을 사전통지 하여야 함

- (지자체) AgriX 시스템에 입력된 부적합 우려필지·부적합 사유 등을 확인하고, 농업인이 기본직접지불금을 올바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Agrix 시스템: 신청정보(신청농지정보) → 사전 모니터링 결과 → 농지형상 유지·미유지 면적을 확인하고, 미유지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신청인에게 안내

\* 등록증 발급(~5월) 이후 이의신청 및 변경기간(14일)이 지난 후에 신청 정보를 정정 하였더라도 감액 대상에 포함되지 반드시 기간 내에 변경될 수 있도록 안내

## 마. 조사대상 선정방법 및 사전통지

- (점검대상)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조사대상은 AgriX의 농업경영정보, 사전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부정신청 고위험군 위주로 이행점검 대상 선정
  -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행점검 대상을 선정하되, 지원·사무소별 여건을 감안하여 순위별 조사물량을 조절할 수 있음
    - \* 이행점검 대상 우선순위: (1순위) 부적합 우려 필지, (2순위) 당해년도 신규 신청 필지, (3순위) 전년도 지급면적을 초과하여 직불 신청한 필지, (4순위) 2년 연속 부적합 필지, (5순위) 3년 연속 미점검 필지 등
- (사전통지) 이행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농지의 현장조사 시 해당 농업인에게 일시, 목적, 내용 등을 7일 전까지 안내하여야 한다.
  - \*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도 가능
  - 다만, 기획조사, 긴급조사 등의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상기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조사대상자에게 현장에서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 바. 이행점검

- 점검의뢰 : 등록된 농지(농업인)에 대하여 농식품부에서 농관원으로 일괄 의뢰
  - 의뢰시기 이후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현장점검 실시
- 점검대상 :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등록된 농지(농업인)
  - 등록된 농지(농업인) 중 경영체 DB 및 현장조사 맵 등을 활용하여 부정신청이 의심되는 대상 위주로 선정
- 점검내용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현지 확인
  -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는 활동 실시(폐경인 경우 해당 폐경면적 지급제외 + 나머지 면적에 대한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농작물 경작·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분(휴경 포함)으로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 \*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개량 행위(예: 부적정 성토)로 직불금이 지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농지개량 원상회복 명령 건은 전수 이행점검 추진(관련: 공익직불정책과-1697, 2024. 6. 10.)

- 농지의 기능을 유지하는 활동 실시(아래에서 1가지 이상 미이행 시 10% 감액)

-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할 것
- ▶이웃 농지 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등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 필요시 지자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 논의 경우 논둑(단, 논에 콩·밀 등 전락작물(가루쌀 제외) 재배 시 둑·이랑·표지석·펜스·말뚝 등 인정), 밭의 경우 둑·이랑·표지석·펜스·말뚝 등 경계설치로 이웃농지와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한 경우 경계 설치 의무 준수로 간주

- 현지 확인 중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등록자가 해당 필지를 실제 경작하지 않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농업인 현장입회, 유선(전화 등), 주변 탐문 등으로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AgriX 시스템을 통해 해당 읍면동(단순착오신청 등 등록 제외) 또는 농관원(부정수급조사)에 통보

\* 증빙자료(조사자 소견서, 농업인 및 관계자 확인 등)가 확보된 경우에는, AgriX 시스템에 자료를 등록하여 추가 조사할 점검·관리기관(지자체·농관원)에 송부

\*\*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등록자가 해당필지를 실제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는 반드시 조사 실시(기본직접지불금 등록정보 기준으로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감액 실시)

○ 점검방법 : 농관원은 세부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모바일 현장점검시스템, 현장조사 맵, 드론 등을 활용하여 이행 점검실시(별지 제33호 서식)

- (면적확인) 재배·휴경·폐경 면적 등은 최근 항공영상(국토지리정보원)을 반영한 모바일 현장점검시스템, 드론촬영 영상, 현장확인 등을 통해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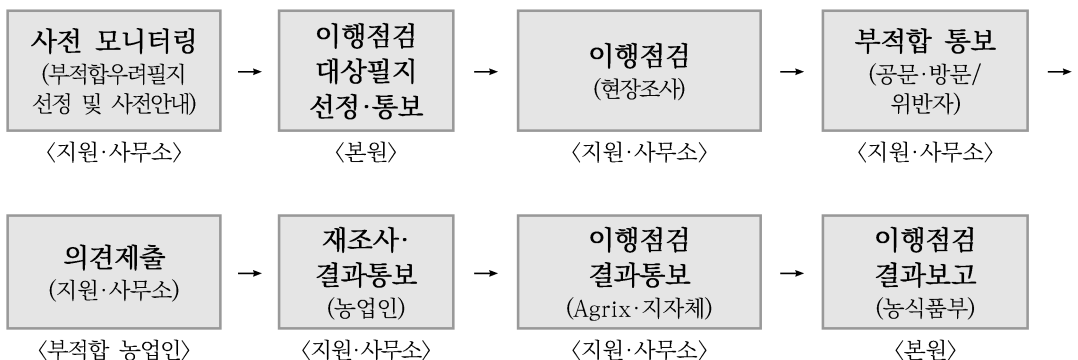
\* 부적합 확인 시, 증빙자료(현장사진 및 조사자 소견서)를 확보·보유

- (재배면적)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며, 농작물 경작·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분을 재배면적으로 산정

\* 준수사항 이행 기간('24.10.1.~'25.9.30.) 내 농작물 경작·재배에 이용된 농지분 포함

- (휴경면적)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할 경우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연간 1회 이상 경운한 농지분은 휴경면적으로 산정
  - \* 다만, 미관리 및 방치 등으로 농지의 형상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폐경 처리
- (폐경면적) 미관리 및 방치 또는 관목, 콘크리트 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농지의 형상을 상실한 토지분은 폐경 면적으로 산정. 해당 면적 신청 시, 해당 면적은 지급 면적에서 제외하고,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을 적용
  - \* 다만, 농지법상 농지(축사 제외)로 생산·개량·부속시설 등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분은 지급면적에서 제외하되,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10% 감액은 미적용
  - \*\* 이행점검 시 생산·개량·부속시설에 대한 조사 실시 및 Agrix 시스템 입력
- (농지의 기능 유지) 재배·휴경하는 농지분에 한정하여 농지의 기능 유지 여부를 점검하며, 농지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의 기능 미유지로 처리하고, 준수사항 불이행에 따른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을 적용
  - \* 경운(휴경농지), 경계 설치,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주변의 용·배수로 유지·관리
- 태풍, 홍수, 전염병 확산 등 여건상 농지의 형상 및 기능 현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이행점검 추진
  - \* 가급적 현장조사 맵, 드론촬영 영상 등을 활용하여 이행점검을 추진하되, 당해연도 태풍, 집중호우 등 원인으로 농지 유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행점검 이행으로 조치

## ○ 점검절차



## 사.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등에 대한 처리

- (증빙자료 확보) 현장조사 시 조사원은 부적합 사항에 대한 현장사진, 조사 내용에 대한 농업인 서명·날인, 조사자 소견서 등 증빙자료를 확보
  - \* 진입로 차단 등으로 농지 접근이 어려울 경우 직불신청자에게 경작여부 전화 확인(미경작 시 녹취록, 위성사진 1장 첨부) 가능
- (부적합 통보) 이행점검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7일 이내에 부적합 결과와 기본직불금 감액사항을 농업인에게 서면 통보(별지 제34호 및 제35호 서식)
- (의견서 제출 및 재조사) 부적합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결과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 의견서(별지 제46호 서식)를 농관원에 서면 제출
  - \* 해당 농업인이 결과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의견서를 받은 관할 농관원은 제출된 의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고 재조사 결과를 농업인에게 서면 통보(별지 제36호 및 제37호 서식)
  - \* 재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 농업인 의견청취는 없음
  - \* 다만, 부득이 서면 통보서가 반송될 경우 전화 녹취, 농업인 서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서면 통보 대체 가능
- (결과 통보) 농관원은 준수사항 위반자(10.1.)와 이행점검결과(10.31.)를 농식품부에 서면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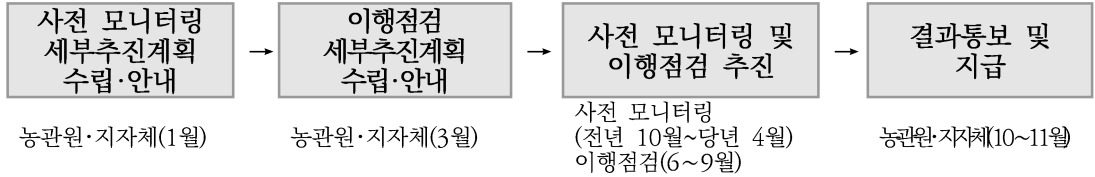
## < 꼭 알아야 될 사항 >

### ▶ '농지의 형상' 이행점검 원칙 및 처리방안

- (원칙) 5월말 등록대상 정보를 기준으로 이행점검을 추진하여 폐경 등 농지형상 위반 적발 시 엄격한 감액조치
  - ① 공익직불법상 신청 등록을 잘못된 경우에는 감액 조치 등이 불가피하므로 적발 이후 경영체 및 직불시스템 농지에서 삭제하더라도 감액 조치
  - ② 부적합 확정 후 감액 공지 및 시스템 반영, 이의제기를 거쳐 감액 확정
    - ⇒ 다만, 농업인이 등록증 발급 이후, 등록정보 이의신청 기간(등록증 발급 후 14일 이내) 내 폐경 등 부적합 면적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감액 제외할 수 있고, 등록정보 이의신청 기간 이후 변경등록은 원칙대로 감액 적용
- (적용사례) 5월말 등록 이후 9.30일 기간 중 사례
  - ① 5월말 등록 필지(a)를 신청자(A)가 이행점검에 적발된 후 경영체 또는 직불시스템 정보를 9.30일 이전에 삭제하더라도 감액 조치
  - ② 5월말 등록 필지(a)를 신청자(A)가 이행점검에 적발된 후 타인(B)으로 9.30일 이전에 변경 등록하였다더라도 신청자(A)에 대한 감액 조치
  - ③ 신청자(A)가 이행점검에 적발되었으나 농관원으로부터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적격 요인을 해소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면 현장 재확인 후 적합 처리

[업무 흐름]	[시기]	[주요 내용]
①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관리 계획 수립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년도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세부추진계획 수립</li> <li>▶ 세부추진계획을 지자체 등 유관기관 공유</li> </ul>
② 이행점검	2~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등 사전조사 및 현장 조사</li> </ul>
②-1 사전 모니터링	전년 10월 ~당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영상을 활용하여, 부적합 신청이 우려되는 필지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직불을 올바르게 신청하도록 안내 실시</li> <li>▶ 부적합 우려필지는 시스템 연계로 지자체 제공하고, 지자체는 직불 신청면적 적정성 확인</li> </ul>
②-2 이행점검대상 선정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신청 고위험군 대상 필지 중심으로 이행점검 대상 선정</li> </ul>
②-3 현장조사	6~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조사 맵, 드론 등을 활용하여 이행점검 대상 필지에 대한 현지조사</li> </ul>
②-4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통보 및 의견 제출고지	6~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적합 결과가 확정된 경우 7일 이내 해당 농업인에게 부적합 결과를 서면 통보하고 1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고지</li> <li>- 다만, 현장에서 신청인의 확인을 받거나 전화녹취하는 경우 통보 생략 가능</li> </ul>
②-5 의견제출 제출	6~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적합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이행점검기관인 농관원에게 의견제출</li> </ul>
②-6 재조사	6~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제출된 필지에 대한 현장 재조사 후 결과통보</li> </ul>
③ 결과 통보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행점검결과 AgriX 입력·보고(통보) (농관원→농식품부, 지자체)</li> </ul>
④ 이행점검 결과 평가 및 계획 수립	10~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년도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결과 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li> <li>▶ '26년도 이행점검 세부추진계획 수립, 심의 등</li> </ul>

## 가. 이행점검 조사 및 결과 통보



## 나. 공익직불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이행점검 세부 내용

시기	항목	본원	지원·사무소	지자체
'24.10월	사전 모니터링 계획수립	○'25년 사전 모니터링 세부 추진계획수립(전국)	-	-
2월	이행점검 계획수립	○'25년 이행점검 현장조사 세부추진계획수립(전국)	○'25년 이행점검 현장조사 세부 추진계획수립(관할지역) - 광역 시도 및 기초 시군 계획 통보	○'25년 이행점검 현장조사 세부추진계획 공유
2~9월	교육 및 홍보	○농업인 및 조사원 교육 교재제작 등	○농업·농촌 의무교육 등 생산 농업인 대상 이행점검 교육·홍보	○관할 시·군·구 농업인 대상 이행점검 안내·홍보
	사전 모니터링	○사전 모니터링 대상 및 방법 확정 등	○부적합이 우려되는 필지를 선정, 우려사항 시스템 입력 및 지자체 공유	○농관원 사전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하여 부적합 면적 등 신청·접수 시 제외
	이행점검 대상 선정 및 사전통지	○이행점검 대상 필지 선정	○이행점검 대상필지 선정 검토 및 사전통지(관할 지역)	○이행점검 대상 선정결과 시스템 공유
	현장조사	○현장조사업 보완 및 태블릿 PC조사탭 배부	○관할지역(지원 관할) 현장조사 맵, 드론 등을 활용한 조사 ○현장조사 7일전 관련 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	-
	부적합결과 통보 및 의견청취 안내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에 대한 통보 여부 및 의견 제출 고지 적정 관리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 통보 및 의견제출 고지 (서면, 농업인)	○현장조사 부적합결과 및 세부내역 시스템 공유
	의견제출 접수 및 재조사	○의견제출 접수 현황 및 재조사 통보 여부 등 관리 총괄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에 대해 의의가 있을시 관할 농관원에 의견제출 제출(서면) ○의견제출 대상 필지에 대하여 현장재조사 후 최종 결과 통보(서면 등)	-
	이행점검 결과 통보 (지자체)	○이행점검 결과 입력 및 지자체 송부 관리 총괄	○Agrix시스템에 이행점검 결과를 입력 후 관할 지자체 (시·군·구)로 통보	○Agrix시스템을 통해 이행 점검 결과를 통보 받아 감액결정 후 직불금 지급
10~11월	평가 및 차년도 계획수립	○'25년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이행점검 결과 평가 ○'26년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이행점검 추진계획수립(전국)	-	-

## II

# 농약 등 안전사용(잔류기준) 준수



이 지침은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된 사항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의 안전성조사 관련 분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과 장 계 장 담당자	054-429-4131 054-429-4132 054-429-4133

\* 협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등

## 1

### 개요 및 일반사항

**가. 목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하 ‘법’) 제12조제2호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준수해야 하는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기준 준수와 관련되어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

### 나. 근거 법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제17조~제19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시행령 제13조, 제15조(별표3) 〉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할 것
-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기준량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을 준수할 것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7조 〉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수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8조 〉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 〉

- 제12조, 제18조 1항의 의무 미이행자 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67조, 「식품위생법」 등 식품안전관리 법령

## 다. 적용시점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대상 농산물 안전성조사는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 이행점검 기간 : '24. 10. 1. ~ '25. 9. 30.
    - \* '25.8.31일 시료수거일 기준 조사결과, 의견청취 등을 통해 9.30.까지 기본직불금 지급 제한 대상으로 확정 / '25.8.31일 이후 시료 수거를 통해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26년도 감액반영
    - \*\* 안전성 조사 기피자, 생산단계 부적합 고지(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사항 이행 위반자, 도매시장 출하제한 조치 위반자에 대한 적용시점은 고발, 과태료부과 등을 명령(공문 시행)한 날
    - \*\*\* 감액대상은 기본직불 등록 대상자(신청인 기준)만 해당

## 라. 조사대상자 선정방법 및 사전안내

- 생산단계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대상자는 AgriX의 농업경영정보를 활용하여 지역·품목·재배면적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선정한다.(농산물 안전성조사 세부추진계획 참고)
  - \* 친환경, GAP인증, 로컬푸드 등 정책지원으로 대상자가 특정한 경우, 폐광산 등 중금속 오염우려지역의 농산물 안전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선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다만, 전년도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포함할 수 있다.

- 생산 및 유통·판매단계 농산물에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
- 농산물에서 농약 외 유해물질의 잔류기준을 초과한 농가
- 국내 미등록 농약(밀수농약), 등록 취소된 농약(폐기농약)이 검출된 농가

- 조사대상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사전에 안내할 수 있다.
  - 농산물 안전성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과 농약 등 유해물질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일부가 지급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할 수 있다.
  - 시료수거 7일전 경 조사목적, 일시, 장소, 관계 공무원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등이 포함된 현장입회 요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한다.
  - 다만, 유통단계 부적합 농산물 재배농가의 생산단계 재조사, 기획조사, 긴급조사 등의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상기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조사대상자에게 현장에서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 마. 준수사항 이행점검

### ①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 ① 생산단계 농산물

- 농업인이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을 초과한 경우
  - 법 제63조에 따라 농산물에 대하여 출하제한(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 조치하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처리한다.

#### ② 유통·판매단계 농산물

- 농업인이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및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잔류기준을 초과한 경우
    - 유통·판매단계 농산물에서 위의 기준을 초과한 농업인 중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처리한다.
- \* 유통·판매단계 부적합 처분농가에 대한 생산단계 추적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1건의 준수 의무 미이행으로 처리한다.

#### ③ 국내 미등록 농약성분 등 검출 관련 사항

-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성분 또는 최근 5년 이전에 등록 취소된 농약성분(별지1)이 검출된 경우
  - 허용기준과 상관없이 「농약관리법」 제23조에 따른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처리한다. 다만, '18년 환경유래잔류허용기준(eMRL)으로 설정한 농약성분(DDT, 엔도설판, 퀴토젠, BHC)은 제외한다.
- 국내에서 최근 5년 이내 등록 취소된 농약성분(별지1)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처리한다.
  - 다만, 허용기준 이내 검출은 감액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기타사항

-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 생산단계(「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유통·판매단계(「식품의 기준 및 규격」)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3항에 따른 감액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위의 농업인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경우에는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처리한다.

- 수출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수출농산물(수출한 경우에 한함)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수입국 기준에 적합하면 준수 의무 이행으로 처리하고, 수입국 기준과 국내 기준을 동시에 초과하여 수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기본직접 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 사항 미이행으로 처리한다.

② 농산물의 농약 외 유해물질 잔류기준 준수

- 농약 외 유해물질 중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잔류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준수 사항 미이행으로 처리한다.
  - 다만, 중금속, 방사능, 독소류와 같이 비의도적인 요소로 오염되어 해당 농산물을 폐기한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감액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출하제한 명령준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의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의 처분사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20조(별칙)에 따라 조치하고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준수 사항 미이행으로 처리한다.

**바. 이행점검결과 처리**

- (이행점검 거부·방해·기피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2조에 따라 안전성 조사를 위한 수거·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 한 자는 같은 법 제123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전성조사 기관)하고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전액에 대한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치한다.
- (의견청취 등) 농관원(지원·사무소)에서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결과를 통보(별지 제38호 서식)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통보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별지 제46호 서식”에 따라 10일 이내 관할 농관원(지원·사무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출하제한 명령준수 위반, 안전성조사 기피 등으로 고발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의견청취 없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제한대상으로 처리한다.
  -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의견서를 제출받은 관할 농관원(지원·사무소)은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한다(추가 농업인 의견청취는 없음).

\*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고지 및 농관원의 유통단계 부적합에 따른 생산단계 안전성 재조사 시 현장에서 안전성 준수사항 위반 통보 및 의견서를 받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로 같음한다.

## 사. 결과 보고

- (이행점검 결과입력) 농관원(지원·사무소)에서는 이행점검결과 미이행 정보를 10.1일까지 안전성정보관리시스템(SafeQin)에 입력한다.
- (이행점검 결과전송) 본원에서는 입력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기본직접지불금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는 매년 10.10일까지 AgriX에 최종 전송한다.
- (결과보고) 농관원(소비안전과)은 10.31일까지 이행점검 결과를 농림축산 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2

'25년도 공익직불제 안전성조사 관리 추진계획

[업무 흐름]	[시기]	[주요 내용]
①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 및 교육	1~2월	▶ '25년도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 세부 추진계획 지자체 등 유관기관 공유
↓		
② 상시 안전성조사	연중	▶ 부적합 농산물 유통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조사
②-1 조사대상자 선정 및 사전안내 등	출하 1~2개월전	▶ 농업경영정보를 활용 지역·품목·재배면적을 감안 무작위 조사 대상자 선정 및 사전 안내 ▶ 시료수거 7일전 경 시료수거 입회요구서 발송
↓		
②-2 시료수거 및 분석의뢰	출하 10일전	▶ 조사원 등을 활용하여 현장 시료 수거 및 분석기관에 시료 제공 (사무소) 및 분석추진(지원, 민간위탁기관 등)
↓		
②-3 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 및 결과 통보	출하 3일전	▶ 부적합 사실 관계기관(지자체)에 통보 ▶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사무소)
↓		
②-4 출하연기, 폐기 등 처분 이행점검	완료시	▶ 부적합 농산물 등에 대한 처분요구사항 이행점검
↓		
②-5 준수사항 위반자 결과 입력	연중 (완료시)	▶ 최종 결과 입력(지원, 사무소) - 안전성조사 결과 공익직불제 준수 의무 미이행자
③ 특별조사 등	발생시	▶ 유통단계 부적합의 생산단계 재조사(수시) ▶ 동절기·하절기·추석대비·김장채소류 등 기획조사 ▶ 친환경, 로컬푸드, GAP 등 정책지원을 위한 조사 등  * 특별조사 등 시료수거 및 부적합에 대한 조치는 상시조사 절차와 동일
↓		
④ 결과 점검 및 통보	10월	▶ 안전성 준수 의무 미이행 등을 종합 검토(본원) ▶ AgriX에 공익직불제 준수 의무 미이행자 전송(10.10.)
↓		
⑤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결과 평가 및 계획 수립	12월	▶ '25년도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결과 성과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 ▶ '26년도 안전성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심의 등